###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693 발의연월일: 2025. 4. 10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신영대 · 이원택

이성윤・조계원・허 영

박희승 · 김교흥 · 안도걸

민병덕 · 강준현 · 김태년

박민규 · 김우영 · 김태선

허종식 의원(16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국 내가격과 수입가격 간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·징수하고, 이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할당관세 등에 따라 수입되는 농산물로 인해 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, 농산물 수입을 통해 얻 는 수입이익이 가격 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일부 대기업 계열 수 입업체 도는 수입가공업체 등의 이익에만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 기되고 있음.

또한, 현재 우리나라 농산물 무역수지는 매년 40조원 가까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농산물 수입에 따른 이익금의 일부를 수 입 개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국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실질 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.

이에 수입이익금 징수 대상에 「관세법」 제71조제1항에 따른 할당 관세를 부과한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를 포함하고,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지출용도에 국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수입이익금 중 100분의 50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수입이익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를 완화하고,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16조, 제57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#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.

제16조제1항 중 "제15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농산물을 수입하는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15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
- 2. 「관세법」 제71조제1항에 따른 할당관세를 부과한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

제57조제2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7호(종전의 제5호) 중 "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"을 "진흥, 생산자단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"으로 한다.

- 5.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품목별 국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. 이 경우 수입이익금 중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수입이익금을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- 6. 제16조에 따른 농산물 수입이익금의 부과・징수에 필요한 지출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수입이익금의 징수 등) ①	제16조(수입이익금의 징수 등) ①
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<u>제15조</u>	<u>다음 각</u>
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농	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<u>산물을 수입하는</u> 자 중 농림축	
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품목의	
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	
여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	
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	
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	
입이익금을 부과・징수할 수	
있다.	
<u>&lt;신 설&gt;</u>	<u>1. 제15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</u>
	<u>받아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</u>
<u> &lt;신 설&gt;</u>	<u>2. '관세법」 제71조제1항에</u>
	따른 할당관세를 부과한 농산
	물을 수입하는 자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57조(기금의 용도) ① (생 략)	제57조(기금의 용도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	② (현행과 같음)
을 위하여 지출한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5.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

<신 설>
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 진흥을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③ ~ ⑤ (생 략)

품.	곡별	국	내	생	<u>산</u>	자_	및	샹	<u> 산</u>
<u> 자</u> 당	<u></u> 단체	에	대형	한 .	지.	원.	0]	た	우
<u>수</u>	입이	익금	<u>1</u>	중	1	.00	분의	기	<u>50</u>
이건	상의	범	위	에스	4	농	림측	· 추신	닉
품녀	부렁	<u>O</u> Ē	<u> </u>	정	하	는	Ħ	미율	-의
	일이								
	사단								
	용하								

<u>6.</u>	제16조에	따른	농산물	수입
	이익금의	부과•	징수에	필요
	한 지출			

<u>7</u> .	 	 	 	_	 	_	 	 _	_	_

-----<u>진흥</u>, 생산자단체 지원을 위하여 필 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정하는 사업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